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교통사고 조사원 직종이 추가됨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에 교통사고조사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공요청 대상 자료 범위 및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 개정

3. 주요내용

-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 등록 자료 추가(안 제54조의2제1항제19의15호 신설)
-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 추가(안 제54조의2제2항제4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7. 9. ~ 8. 18.)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항에 제19호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15.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
등록 자료

제54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
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5호”로 한다.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

부 칙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①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근로소득자료·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① ----- ----- ----- ----- ----- -----.		
1. ~ 19의14. (생략)		1. ~ 19의14. (현행과 같음)		
<u><신설></u>		19의15.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 등록 자료		
20. (생략)		20.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0조제2항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②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		

4. (생략) ③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의 명단 및 노무제공자의 명단·소득·노무제공내용 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2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 다. (생략)	<u>회사등</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 ----- -----. 1. ----- <u>제4호</u>----- ----- ----- ----- ----- ----- ----- 2. <u>제2항제5호</u>-----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8834